

출장복명서

1. 출장기간: 2015년 5월 12일(화) - 5월 15일(금)

2. 출장지: 중국 베이징, 상하이

3. 일정 및 방문기관

2015년 5월 12일(화)

14:00 상하이 도착

15:00-18:00 동화(東華)대학 방문 Jihong Jin 교수, Liu Dongsheng 교수 등 면담

2015년 5월 13일(수)

13:00 베이징 도착

14:00-17:00 베이징 대학 방문 이소영 교수 면담

2015년 5월 14일(목)

10:00-12:00 산업연구원 북경지소 방문 이문영 소장 면담

14:00-16:0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Zhin Shengmin 과장 면담

2015년 5월 15일(금)

10:00-11:00 북경중해통과기유한공사(중국해관 자료대행회사) 방문

4. 면담결과

[중국기업개혁과 경쟁정책]

(1) 면담을 통한 출장자의 전반적 인상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경제성장에 주력하여 왔음.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지는 않음. 학자들도 이에 관해 명확한 설명은 못하고 있음.

- 다만 국유기업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부

분은 민영화(정확하게는 민유화)시킴으로서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한 것으로 보임.

- 기업부문 외에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정책적 역할, 분배적 기능, 형평성 문제, 복지 등 기타 일반적으로 시장경제하에서 갖는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느낌이었음. 중국이 사회주의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좀 놀라운 인식이었음.
- 중국의 모든 정책은 경제발전, 좀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GDP의 성장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 중국은 비록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와는 상당부분 다른 체제임. 우리의 시각(일반적인 시장경제적 시각)에서 중국경제에 접근할 경우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음.

- 중국은 시장경제로 전환하였다고 하였지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저변에 강하게 잔존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정부의 무오류성, 공산당의 무오류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제의 중요부분을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국유기업이 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음.
- 그리고 국유기업의 기능과 정부의 기능은 활동분야가 다르다는 것뿐으로, 좋은 관리는 좋은 경영자가 되며, 또 좋은 경영자는 다시 좋은 관리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강한 것으로 느꼈음.
- 중국 학자들이나 정책당국자와 면담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전되면 어떤 “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음. 즉,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혹은 인식, 경제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우리와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느꼈음.

□ 중국의 경쟁정책의 도입(반독점법: 反壟斷法)은 중국이 시장경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 시장경제 국가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경쟁법의 기본적인 철학에서 우리(선진 시장경제국가를 포함하는)와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는 행위의 “공정성”(fairness)를 중시하는데 비해 중국의 경우 “공평성”(equity ?)을 중시하고 있음. 즉, 일반적으로 경쟁법에서는 그 경쟁의 수단 혹은 방법의 정당성을 문제삼는데 비해, 중국의 경우 그 결과를 중시함. 이는 경쟁법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임.

□ 중국의 경쟁법은 상당히 복합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중국의 경쟁법은 ① 반독점법, ② 가격법, ③ 반부정당경쟁법의 3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음.

- 반독점법은 일반적인 경쟁법과 유사함.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을 규제하고 있음.
- 가격법은 현재의 중국경제의 특징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법임. 독점적 가격남용행위의 규제라는 경쟁법적인 요소는 물론 시장전반에 걸친 가격통제장치의 보장, 공공요금의 규제, 거시경제정책적 물가관리, 수급조정 등 비상조치적 가격정책, 유통구조근대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산업정책적 수단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법임.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법」과 유사하나, 그 포괄범위가 훨씬 더 넓음.
- 반부정당경쟁법은 그 기본기능이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유사함. 그러나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이 경쟁의 여부를 떠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당한 경쟁방법(예컨대 기술의 절도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은 경쟁법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음.

□ 중국의 반독점법이 대내외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반독점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기업에 대해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중국 정책당국자들이나 학자들이 반독점법이 외국기업에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굳이 부정을 하지 않고 있음. 반독점법 정책의 도입배경 가운데 중요한 것이 외국기업에 의한 기술독점을 방지하는데 있다는 것임. 과거 중국이 자본과 산업기반이 취약하였을 때는 외국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경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한 지금에 와서는 외국기업에 의한 과도한 독점력의 행사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임.
- 그렇지만 중국은 국내기업에 의한 독점적 행동도 규제하고 있음. 다만 국내기업의 경우 특히 국영기업의 경우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독점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당분간 반독점법은 외국기업들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것임. 그렇지만 이러한 제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반독점법에 의해 제재를 받은 외국기업의 경우, 동일한 행위가 다른 선진시장경제국가들에서 행해졌다면 역시 비슷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컸을 것임. 이와 함께 중국의 반독점법은 앞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위법성의 기준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선진시장경제국가들은 독점적 행위 가운데 “방해적 행위”를 문제시하고, “착취적 행위”에 대해서는 방관하는데 비하여 중국은 착취적 행위를 문제시하는 경향이 강함.

(2) 주요 면담내용

□ 동화대학교(Jihong Jin 교수, Liu Dongsheng 교수 등)

- 중국의 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토의.
-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기업개혁의 과정, 추진방법, 최근의 제도정비 등에 관하여 토의

□ 베이징대학 (이소영 교수)

- 중국의 경쟁법에 대해서 논의
- “공정성”과 “공평성”이 갖는 의미. 이와 관련한 중국 반독점법의 법철학
- 국영기업의 소유, 경영에 관한 논의
- 시장에 대한 개입수단으로서 가격법의 범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Zhin Shengmin 과장)

-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 현황에 관한 설명
- 행정독점에 대한 국가발전위원회(경쟁정책당국)의 대응
- 반독점법의 포괄범위. 반독점법 집행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협조에 관한 설명

[중국 무역통계에 관한 사항]

□ 북경중해통과기유한공사는 중국해관 자료(수출입 통계)의 대외제공을 담당하는 회사임. 해관통계제공 회사는 3개가 있으나 동 공사의 자료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중국의 수출입 관련 통계는 해관총서가 제정한 해관통계 업무와 관련된 행위 및 규범인 해관통계제도에 기반
- 중국의 수출입 물품의 통계 범위, 통계 항목, 목표 개념, 계산 방법, 통계 자료 전달 순서 및 전달 시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전국의 해관통계 업무의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

□ 중국의 무역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국제통용의 대외 무역 통계 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음.

- 2000년대에는 WTO 가입에 의한 무역량의 급증으로 해관의 관리업무

가 폭증함에 따라 2001년 “해관법집행감독시스템”을 개발하고, 2005년 초에는 “수출입상품 모니터링 경보시스템”도 개발

- 2006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통계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통계 작업관리규정>을 공포하면서 해관통계제도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
- 현재 중국무역통계를 구매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연구기관으로서는 KIET와 KIEP가 있음. KIET는 동 공사를 통해 수출입 통계를 구매하고 있음.
- KIET의 경우 데이터 최초구입시 10개 연도에 대해 HS 8단위별로 대한민국, 대일본, 대미국, 대독일, 대세계의 수출입 물량 및 금액을 제공받았음.
 - 제공된 수출입자료는 19개 무역형태별, 7개 기업형태별 자료임. 따라서 데이터 건수는 1개의 8단위 HS분류에 대해 [7(기업형태) X 19(무역형태) X 5(상대국가) X 2(금액, 물량) = 1,330]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방대한 양임.
 - KIET의 경우 최초 협의에서는 데이터 가격으로서 1억원을 제시받았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또 데이터 양도 당초보다 2배를 더 받는 조건으로 구입하였다고 함. KDI도 해관통계를 구매할 경우 KIET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의, 공조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